

의안번호	제 2014 - 23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11. 21. (제6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개요	1
1. 제85차 전체회의	1
1. 제86차 전체회의	1
II. 제59차 양형위원 회의 재검토 지시사항 논의결과	2
1. 권리행사방해 범죄	2
2. 업무방해 범죄	3
III. 손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8
IV. 게임물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20

<별첨자료>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II”

강동혁,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추가검토”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황병헌, “게임물범죄 양형인자 검토”

I. 전문위원 회의 개요

1. 제85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4. 10. 20.(월) 14:40 ~ 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나.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박지선, 오기찬,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손괴, 게임물, 업무방해범죄¹⁾ 양형인자 설정 검토

2. 제86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4. 11. 10.(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나.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59차 양형위원 회의 지시에 따른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범죄 일부 양형인자 재검토
- 손괴, 게임물 범죄 양형인자 추가 검토

1) 위 세 범죄 중 업무방해범죄 논의결과는 지난 59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미 보고한 바 있음

II. 제59차 양형위원 회의 재검토 지시사항 논의결과²⁾

1. 권리행사방해 범죄

가. 강요 유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 여부

(1) 다수의견(8명) :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이재권, 황병현, 강동혁, 김혜정, 노수환, 이진국, 강수진, 박수진 위원

- 단체·흉기 범행이 폭처범위반이 아닌 중강요(2유형)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강요 유형은 체포·감금과 마찬가지로 상습·특수·누범과 상습특수·누범특수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상습특수·누범특수강요는 상습·누범강요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단체·흉기 범행을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폭처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일반상해 등 범죄에서도 위 양형인자가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일반강요(1유형) 중 단체·흉기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폭처범으로 기소된 경우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양형인자 적용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음
- 양형기준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정한 형량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의 실질적 양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범죄가 어떠한 구성요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지 양형인자 설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음
- 폭행·협박범죄, 체포·감금범죄 등 다른 범죄군의 양형인자 설정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

(2) 소수의견(4명) :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김현아, 오기찬,

2) 논의의 편의를 위해 86차 전문위원 회의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함

최준혁, 최진녕 위원

- 중강요는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처법상 특수강요가 중강요보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단체·흉기 범행은 폭처법상 특수강요로 기소될 것이므로, 폭처법으로 기소되지 않은 단체·흉기 범행을 전제로 양형인자를 설정할 실익이 없음
- 상습특수·누범특수강요의 실제 사례가 전혀 없고, 상습·누범·특수강요에 관하여는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습특수·누범특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해 양형인자를 설정할 실익 또한 없음
- 단체·흉기 강요는 당연히 폭처법으로 기소될 것이므로, 폭처법으로 기소되지 않은 일반강요(1유형) 범죄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사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업무방해 범죄

가. 업무방해 유형

- (1)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 유지 여부

(가) 제기된 문제점

- 쟁의행위의 경우 그 개념상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이 범죄성립요건이 될 수밖에 없음 ⇨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삼을 경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는 순간 곧바로 가중영역에서 시작하게 되는 불합리 발생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은 범죄는 폭력, 체포·감금, 공무집행방해처럼 위 인자가 폭처법, 형법 등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업무방해 범죄는 그와 같은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폭력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해야 할 필연적 이유 없음

(나) 위 특별가중인자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변경하기로 의견일치

- 기존안은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이 범죄 성립요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쟁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이 큼
- 또한 업무방해 범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기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가해/피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범하였다 하여 반드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을 일률적으로 가중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용역 동원 등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한정하는 한편, 비난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법의 범행을 함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양형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임
- 공갈, 횡령·배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규정의 예시를 정함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한편, 위 정의규정 중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와의 중복방지를 위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던 ‘계획적 범행’을 인자에서 삭제하기로 함

(2)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 반영 여부

(가) 검토배경

- 위 인자는 기존 검토 안에서는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 설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되었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일 텐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게 되면, 조직·단체·다중과 함께 하는 범행의 주도자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위 두 개의 특별가중인자를 안고 출발하게 됨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일치

- 다수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범행의 주도자와 그렇지 않은 공범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의행위의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이상 다른 유형의 업무방해죄와 달리 취급할 근거 빈약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특정 범행수법의 범죄들만을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만큼, 범행주도자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당초 우려한 형량 불균형 문제는 상당 정도 희석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범행주도자를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경매·입찰 방해 범죄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의 일관성 유지도 고려

(3)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가) 제기된 문제점

- 기존 검토안의 정의규정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업무방해로 생긴 피해액 자체의 객관적 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피해가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에 미친 손해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위 정의규정은 그러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나)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하기로 의견일치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경매·입찰방해 유형

- (1)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 유지 여부

(가) 제기된 문제점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은 범죄는 폭력, 체포·감금, 공무집행방해처럼 위 인자가 폭처법, 형법 등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경매·입찰방해 범죄는 그와 같은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폭력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해야 할 필연적 이유 없음
- 업무방해 유형과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나) 위 특별가중인자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변경하기로 의견일치

- 업무방해 유형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그와 일관성 유지 필요
- 경매·입찰방해 범죄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법의 범죄를 가중 처벌할 필요 있음
 - 위력형의 경우 실무례가 많지 않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법의 범행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 위계형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법을 넘어서서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불법의 정도가 중하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
- 아래와 같이 정의규정의 예시를 정함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Ⅲ. 손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7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3년-6년	5년-8년	7년-10년

2. 일반적 기준 유형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다수의 범죄들이 아래와 같은 정의규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정의규정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 폭력, 공갈, 사기, 절도 등 범죄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고, 손괴 범죄 실제 사례에서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경우가 있음
- 정의규정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고의의 측면에서 감경요소로 규정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결과불법의 정도가 낮은 점이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 정의규정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 4유형)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 위 양형인자는 손괴범죄 객체에 관한 주관적 요소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인자와 중복되지 않음
- 정의규정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괴범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므로, 처벌불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금액을 공탁하거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이를 영향력 있는 감경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특별가중인자(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제외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유형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과 사이에 형량역전 현상이 발생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함

- 예컨대, 지정문화재손상 유형(일반적 기준 3유형)에서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가중영역(2년6월-4년)으로 가게 되고, 국가지정문화재손상 유형(일반적 기준 4유형)에서 동일 인자가 적용될 경우 역시 가중영역에 포섭되어 3년-6년의 형량범위가 적용되는 데 반해, 동일 사안이 문화재특수손상죄(상습·누범·특수손괴 3유형)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음에도 더 낮은 형량범위(기본영역 : 2년-4년)가 적용되게 됨
- 재물손괴등 유형(일반적 기준 1유형)에서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의 형량범위(가중영역 : 8월-1년6월)와 동일 사안이 특수손괴죄(상습·누범·특수손괴 1유형)로 처벌받을 경우의 형량범위(기본영역 : 8월-1년6월)가 동일해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다중에 의한 범행 등에 대하여 주모자와 그렇지 않은 공범의 가벌성 차이를 반영할 필요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다만,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해가 중한 것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특별가중인자로 요구하게 되면, 피해가 중하지만 공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는 범행 시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감안 없이 처음부터 특별감경인자로만 고려되어 부당 ⇨ 특별가중인자에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절도범죄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음
- 정의규정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 체포·감금, 사기, 공갈 등 범죄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정의규정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중손괴(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형량의 적정한 균형 유지를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라. 일반가중인자(행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폭처법상 공동손괴 가중규정을 고려하여 폭력범죄 등에서처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에 대한 파괴범죄에 대해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점을 고려
- 정의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계획적인 범행

- 정의규정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의 경우 처리에 관한 부가규정을 두고 있음
 - 손괴범죄의 경우도 폭력범죄가 수반되거나 폭력성이 발현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과 동일한 처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감경인자

-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에서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

- 상습·누범·특수손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안을 상정하기 어려움

나. 특별가중인자

-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들 중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1,2유형)'를 제외

다. 일반가중인자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3년 이상 45년 이하)과 그 외 지정문화재 등 특수손상(2년 이상 45년 이하)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

4.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가. 특별양형요소에 대한 검토

(1) 개요

- 재물손괴의 기회에 상해, 사망 등 신체침해 결과로 나아간 점에 대한 불법을 법정형에 크게 반영한 유형
- 따라서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와 관련한 요소, 미필적 고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 의도 여부 등 손괴범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에 관한 요소 등은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3유형)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1, 3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2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3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성범죄, 강도범죄, 체포·감금범죄 등의 예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2, 4유형)

○ 성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에도 동일한 양형인자가 반영되어 있음

○ 정의규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적 기준, 상습·누범·특수 손괴 유형에서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그러나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상해, 사망 등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아간 이상 ‘상당부분 피해회복’이라는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제외

(3)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의 치상/치사 범죄의 경우 법정형도 높으며, 행위태양의 위험성에 따른 비난가능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높음
- 폭력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 양형기준 참조

□ **중한 상해(1, 3유형)**

- 정의규정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구 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V. 게임물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1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발행, 복표발매·증개	3년 ↓, 5년 ↓	4월-10월	6월-1년6월	1년-3년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2	사행성유기기구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5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3	도박장소·공간 개설	5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4년

02 불법스포츠도박 등⁴⁾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경정등 ³⁾	3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유사경마	5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3	유사스포츠토토	7년 ↓, 5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⁵⁾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2년 ↓	-8월	6월-1년2월	10월-2년
2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5년 ↓	-10월	6월-1년6월	1년-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5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2년 ↓	-8월	6월-1년2월	10월-2년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토토발행시스템	5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3) 법률상 유사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 등을 참조하여 '사설' 대신 '유사'로 용어만 변경

4) 기존의 '사설경마 등' 유형의 명칭만을 수정

5) 기존 논의에서는 해당 유형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으나, 적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세 번째로 배치함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2년 ↓	-6월	4월-10월	8월-2년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제조판매업	3년 ↓	-8월	6월-1년4월	10월-2년

2. 각 범죄유형별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 다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었음

01 도박장소 개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2 불법스포츠투박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특별가중인자(행위)

- 게임물관련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 유형, 증권·금융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유형 등은 판매액,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보건범죄 중 부정의료행위 유형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도금, 배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일부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양형인자의 정의를 들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었음(후술)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행위)

-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 유형, 공문서범죄 중 위조·변조 유형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게임물관련범죄는 대부분 영업범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영세한 규모의 영업장 업주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있어서’로 한정하기로 함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특별가중인자(행위) [무허가·무등록영업 중 1 유형]

-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중 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은 본래 행정단속법규 위반 범죄로 사행성 조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를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도 비교적 낮게 설정됨
- 그런데 실무상 게임물 자체는 사행성이 없음에도 영업방식의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영업방식의 게임장에 게임물을 공급한 경우를 무허가·무등록영업 중 1유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사행성이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기소·처벌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무상 사례도 종종 발견되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적·전문적 범행 ⇨ 제외

- 게임물관련범죄는 대부분 영업범으로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방법이 전문적인 경우 또한 많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은 대부분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와 중첩될 가능성이 큼
- 게임물관련범죄는 영세한 게임장 영업인 경우에도 업주, 중간 관리자(영업사장, 실장 등), 단순 종업원 등 조직성을 띠고, 최소한의 물적 시설(영업장, 게임기, 컴퓨터 서버 등)이 갖추어 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직성, 계획성, 전문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범죄수익이 큰 경우와 함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는 대신 조직적·전문적 범행은 별도의 가중
인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나.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 특별감경인자(행위)

-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실무상 방조
범으로 기소·처벌되는 경우도 많음) 범행가담정도가 특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상당함
-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단순 가담’ 을 특별감경인자
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특별감경인자(행위) [도박장소 개 설 등, 무허가·무등록 영업,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 당구장 업주가 대기 손님을 위해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낚시터 운
영자가 손님 유치를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
여 소규모로 이루어진 범죄는 가벌성이 약하고 실무상 가벼운 처벌
이 이루어지고 있음(약식기소·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 불법스포츠도박 등 및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실무상 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외함
- 양형인자의 정의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
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행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에서 등급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미등급 게임물, 환전·환전알선·

재매입은 실무상 대부분 사행성 영업을 위한 것이고 권고형량범위도 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사행성과 무관한 경우(단순히 게임 배경화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일반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행위)
 - 범죄수익규모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곤란 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행위)
 - 단속 경찰관 또는 행정기관 등과 유착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식품·보건범죄와 조세범죄의 예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 **단속대비 시설 등의 설치** ⇨ 일반가중인자(행위)
 -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열기 어려운 철문 등을 설치한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일반가중인자(행위)[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 사행성 영업을 경우 인터넷, SNS, 대량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광고 또는 유인행위를 통하여 도박 등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중 성매매알선 등 유형에서는 이를 특별가중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수익규모나 영업규모가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가중인자(행위자)

- 수사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공범 상호간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고, 이러한 사유가 불리한 양형이유로 고려되고 있음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 증권, 선거, 변호사법 등 범죄군의 예에 준하여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라. 일반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행위)

-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하는 점, 범죄수익규모 및 실제 이득액을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하고, 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예에 준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로 규정함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행위)[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 복표발매 중개(3년 이하)는 복표 발매(5년 이하)보다 범정형이 낮고, 복표 발매의 방조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 행위태양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

□ **유통한 게임물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행위)** ⇨ 일반감경인자[불법게임물 등 유통,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을 유통한 범죄에서 유통한 게임물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각 유형에 따라 양형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

은 경우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특별가중 인자)’의 양형인자 정의방법

(가) 논의의 전제

- 게임물관련범죄 중에서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의 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중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 범죄(도박공간 개설),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형은 대부분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액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액이 드러나 있어 범죄수익 등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형인자 설정이 가능함
- 반면 다른 유형의 범죄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밖에 범죄의 태양 또는 영업방식도 다양하여 영업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형인자 설정도 곤란함
- 이에 따라 일부 유형의 범죄에 한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나) 1안(소수의견 : 4명) - 도박공간개설,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형에 한하여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명시 :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최준혁 위원

- 위 유형 범죄에서는 대부분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액이 드러나 있고, 범죄사실의 하나로 공소장 및 판결문에도 적시되며,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되고 있음
- 오프라인 게임장, 도박장은 위 유형과는 범행의 양상이 다르고, 일부 도금 등이 압수되더라도 이를 모은 금품 또는 범죄수익 등으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적시하지도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도박, 스포츠평타, 유사경마 등이 장차 불법 사행성 영업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한 양형실무의 정착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오프라인 게임장, 도박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 제시까지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명시할 경우 도박 등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범죄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모은 금품 10억 원 이상, 수익금 5천만 원 이상의 도출 근거에 관하여는 별첨 “게임관련범위반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12쪽 이하 참조

(다) 2안(다수의견: 8명) - 모든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이재권, 강동혁, 김현아, 박수진, 오기찬, 이진국, 최진녕, 황병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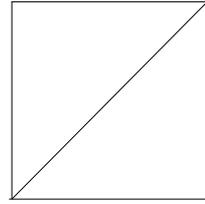
- 도박, 사행성 영업은 모두 그 본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의 현실적 한계로 범죄수익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금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금액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유형에 대하여 더 작은 범죄수익 금액으로 이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는 더 손쉽게 참가자를 모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유형을 우대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수사·재판상의 한계로 인한 밝혀지지 않은 범죄수익의 존재가능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유형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함
- 양형분석 사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모은 금품 10억 원, 범죄수익 5천만 원이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하여도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모은 금품, 범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규모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수익 등에 관해서도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게임물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의안번호	제 2014 - 24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11. 21. (제6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2
1. 개요	2
2. 관련 규정	2
3. 의견수렴 계획	2
4. 시행 일정	10
III. 2015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11
IV. 2015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19
1. 목표	19
2. 교육기간 및 장소	19
3. 교육 과정	19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19
5. 교육 내용	19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1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1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86차	2014. 11. 10. 16:00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업무방해범 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60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10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될 예

정인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및 제11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인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나.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7		법 무 부	검찰국장
8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9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0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1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2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3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4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8	유 관 기 관	게 임 물 관 리 위 원 회	사무국장
19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0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복 권 위 원 회	사무처장
24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사무처장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7	시 민 단 체	경 제 개 혁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8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9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30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번	구분	기관	비고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장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		법 무 부	검찰국장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0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1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구기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4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9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0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6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7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2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9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0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1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2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3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4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6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17	유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18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19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단체	경제개혁실천시민연합
2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5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6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2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정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무부	검찰국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9		조 달 청	운영지원과장
10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1	연구기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2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3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4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7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8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19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0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4	시민단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25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6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27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장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		법 무 부	검찰국장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0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1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4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9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0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6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7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2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4. 11. 26. ~ 2014. 12. 26.

○ 의견조회 취합 : 2014. 12. 29.

※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 제61차 회의 시 보고 예정

III. 2015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기획운영과

순번	구분	내용
1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15-기획-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마련 ○ 양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보완 - 제1, 2, 3, 4기 양형기준 운영점검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 개선사항 검토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및 양형기준 마련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초안(수정안) 작성 - 양형기준안(수정안) 의결 - 공청회·공개토론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 실시 - 양형기준(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양형기준(수정 양형기준) 공개 및 시행
2	5기 양형위원회 출범 지원 (15-기획-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양형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4. 26. 제4기 양형위원회 임기 만료 및 2015. 4. 27.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 예정 - 위원장, 위원 12인 임명·위촉 ○ 제5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순번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 전체회의 일정 수립 및 예상 회의 의안 정리 -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및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수립·보고
3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15-기획-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제5기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주최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검토
4	양형기준 공개 (15-기획-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관보 게재는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 절차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양형기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 홍보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새롭게 시행되는 양형기준 게시 - 새롭게 의결된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을 망라한 『2015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

순번	구분	내용
		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5	201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15-기획-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 - 2014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및 2015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정리 - 연간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연간보고서 국회 보고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6	전문위원 업무 지원 (15-기획-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시 수시로 연임 또는 신규 위촉 - 전문위원 연구의 전문성·연속성·효율성·객관성을 고려하여 조직 정비 ○ 전문위원단 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통한 2015년도 연구계획 확정 및 위원회 의결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검토 - 제5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수정안) 초안 작성 및 위원회 보고 - 2015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심의 및 위원회 보고

순번	구분	내용
7	자문위원 회의 개최 (15-기획-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만료·사임 등에 따른 자문위원 연임 또는 신규 위촉 - 2015년 회의 개최계획 수립 - 양형기준안에 관한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과정에 반영
8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홍보 강화 (15-기획-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의 구체적 활동내역 및 양형기준제도의 내용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 양형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회 보고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지속적인 관리 - 리플릿,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 등을 통한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도 홍보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시 신문,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 - 연간보고서, 양형기준 책자 등 발간 및 관계기관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

순번	구분	내용
9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15-기획-9)	<p>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 <p>○ 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양형 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한 홍보 - 영문판 양형위원회 홍보 책자 발간 및 양형위원회 영문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c/engsc/index.jsp)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양형기준 국외 홍보
10	양형위원회 각종 자료집 발간 (15-기획-10)	<p>○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 등 각종 회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발간 <p>○ 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운영지원단 등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집 발간·등록

▶ 자료조사과

순번	구분	내용
1	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 업무시스템 개선 (15-자료-1)	<p>○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시행 확대에 의해 증가된 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업무의 업무량 경감 및 효율적인 양형기준 운영점검 실시 방안 강구 <p>○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재판부용 양형기준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관 전용 운영점검 시스템을 개발·운용함으로써 운영점검 소요 시간 단축 및 형량

순 번	구 분	내 용
		<p>범위 산정과정의 오류 예방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정보관리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 개발 중 - 새로운 운영점검시스템 운용에 따른 분석관 상호간 업무분장 개편 방안 모색
2	<p>양형기준 운영점검 (15-자료-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시행 이후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 - 양형기준 시행 확대에 의해 증가된 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업무의 정확성 제고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단 및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 등을 통한 효율적 양형기준 운영점검 체계 구축 - 제1, 2, 3, 4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점검 실시 - 제1, 2, 3, 4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정기적 보고 및 책자 발간
3	<p>양형자료조사 (15-자료-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확정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 및 검찰청 출장 조사 - 확정사건기록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한 범죄군별 선고내역, 평균형량 및 양형인자 등 조사 - 양형기준초안 마련 시 조사내용 반영
4	<p>양형자료 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및 업무 개선 (15-자료-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함양

순번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 통일 방안 모색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의 현황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교육 - 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실무 이론 교육 - 범죄유형별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실습 -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분석관 업무의 전문성, 통일성 제고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편람 수정 및 보완

▶ **통계분석과**

순번	구분	내용
1	양형기준 운영점검 지원 및 통계분석 (15-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2, 3, 4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운영점검 지원 및 통계분석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운영점검 대상사건 리스트 추출, 판결문 출력 및 보존 - 제1, 2, 3, 4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 정리 및 통계분석 실시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 발간(2014년 선고 사건)
2	양형자료조사 지원 및 통계분석 (15-통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조사 대상사건 리스트 추출 및 판결문 출력 -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순 번	구 분	내 용
		회귀분석, 로직회귀분석 등) 실시
3	전문위원 업무 지원 (15-통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전문위원 연구활동 지원 ○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및 운영점검 결과를 분석한 통계 자료 제공 -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실시 및 자료 제공 - 양형기준 연구에 필요한 사건리스트 및 판결문 제공

IV. 2015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1. 목표

- 2015. 1.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을 대상으로 기존 양형자료분석관이 1:1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업무 이해도 제고
-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2.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교육기간

- 2015. 1. 12.(월) ~ 1. 14.(수) 2박 3일간

나.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및 전산실

3.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 6명
- 교육 지원자 : 자료조사과장 및 양형자료분석관 9명
- 교육 강사 : 운영지원단장 외 6명

5. 교육 내용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설명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실습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4. 10. 6.	○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및 의학실력에 관한 홍보 및 영업정지 처분 등 식품업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규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불만 제기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